대의원 선출규정

대의원 선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될 대의원의 정수, 대의원 입후보자의 자격 및 선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수) ①대의원의 선출은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절차를 이행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대의원은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의 해당 시·도회의 재적회원수를 기준하여 선출한다.(개정 2010.10.26)

③선출하는 대의원의 총수는 총 200인 이내로 하되, 총 재적회원수분의 해당 시·도회 회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단수가 60%이상인 때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0.10.26, 2012.12.26)

④임원과 시·도회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제3항에서 정하는 대의원의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6)

⑤대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증가 등을 이유로 다시 선출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선은 다음 총회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보선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0.26, 2011. 2.15)

제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원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준은 당해 선거 전년도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가입 회원은 당해 선거 전년도 6월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2020. 5. 7, 2024. 12. 19)

②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 총회 전년도말 현재 3년이상 당해 시·도회에 소속된 회원인 자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10.10.26, 개정 2011. 2.15, 2011. 7.19, 2012.12.26, 2013. 3. 8, 2016. 1. 1) <단서삭제 2013. 3.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선출직 직위에 입후보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 개정 2022.12.14)

1. 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협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한 자

④정관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017. 4. 17)

1.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관 (개정 2023.9.19.)

제4조의2(후보등록) ①대의원의 선출을 요할때에는 총회 20일전 근무일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2, 개정 2010.10.26, 2012.12.26, 2016. 1. 1)

②대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도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6)

1. 등록신청서 1부 (시·도회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9.12.22, 개정 2010.10.26, 2016. 1. 1)
2. 서약서 1부 (시·도회선거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9.12.22, 개정 2010.10.26, 2016. 1. 1)
3. 이력서 1부 (신설 2009.12.22)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시·도회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1.12.27, 개정 2016. 1. 1, 2025. 7. 1)

③입후보자 등록기간은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3일간으로 하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하며, 등록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16. 1. 1)

제5조(선출방법) ①대의원은 시·도회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시·도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그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26, 2012.12.26, 2016. 1. 1, 2024. 12. 19)

②선출하는 연도의 정기총회가 기한 내에 개최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종전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시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개정 2012.12.26)

③대의원은 협회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하여 회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원의 종류별 업역별 균형있게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도회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12. 1, 개정 2010.10.26, 2011. 2.15)

④대의원을 투표에 의해 선출할 경우에는 미리 검표원을 선출하여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⑤대의원 선출 선거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회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 2.15, 개정 2016. 1. 1)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동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회원 2인 이상을 선출할 수 없다.(신설 2024. 12. 19)

제5조의2(특수한 경우의 선출방법) ①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지시, 방침, 권고 등) 등에 따라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의 선출은 총회 당일 사전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7)

②제1항의 사전투표는 시도회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신설 2020. 10. 27)

제6조(당선의 결정과 무효)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의 당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수득표순으로 한다.
2.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연령도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②대의원의 등록후보자수가 선출대상 인원에 미달되거나 같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12.12.2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회원의 이름을 달리 기재하거나 회원이 아닌 자를 기재한 때
2. 기재내용을 분별할 수 없을 때
3. 백지 또는 소정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시・도회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한 때(개정 2010.10.26, 2016. 1. 1)
5. 기타 이 규정과 이사회 의결 및 총회가 정한 사항을 위배하여 기재하였거나 투표한 때

④당선된 대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의원 취임승낙서를 시·도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회는 취임승낙서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7조(자격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시・도회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개정 2010.10.26)
3. 대의원이 자의에 의하여 사임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4. 삭제 〈2001. 2. 16〉
5. 소속 시・도회가 변경된 때(신설 2011. 2.15)

제7조의2(수당 및 여비) 대의원이 총회 및 행사참여 등 협회업무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2)

제8조(보칙) ①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참

석치 못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의 기산은 시·도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시·도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는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0.10.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정관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는 정관 시행일(2013년 3월 8일)부터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은 2016년 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136차 이사회 의결일(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0.26, 2011.12.27, 2014. 7. 1)

대 의 원 취 임 승 낙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회 원 번 호 :

위 본인은 20 년 월 일 개최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 20 년도 정기총회에서 임기3년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기에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26, 2014. 7. 1)

위 임 장

소속시·도회 : 시·도회

주 소 :

성 명 :

위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_____ 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총회성원을 위해 정관 제25조제4항에 의거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총회 의장 귀하